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거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20. 8.27.(목) 10:00

## 제224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

# 검토보고서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경제환경국 소관)



# 복지건설위원회

전문위원 추병수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#### 1. 제안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2015호

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
다. 제출일자 : 2020. 8. 19.

라. 회부일자 : 2020. 8. 19.

### 2. 제안이유

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그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을 내실 있게 운용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가.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(안 제2조의2)

나.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수정

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기관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1) 신 · 구조문대비표: 별도첨부

2) 입법예고: 2020. 7. 22. ~ 2020. 8. 12.(20일 이상)

3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별도첨부

- 4) 규제사전심사: 별도시행(기획예산과)
- 5) 부패영향평가: 별도시행(민원감사담당관)
- 6) 성별영향분석평가: 별도시행(여성가족과)

### 5. 검토의견

#### 가. 조례안 개정 이유

본 개정조례안은 재활용품판매대금기금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기한을 연장 하고 미비한 조항들을 정비하기 위해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임.

#### 나. 주요 내용

- 안 제2조의2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으로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」제4조에 따라 기한 연장은 타당하다 보며
- 안 제9조제1항 및 제3항의 조문 내용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기금 운용계획, 결산 및 의회의결 규정을 정비하였으며
- 그 밖에 조문들은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적정하게 정비됨.

### 다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한 조항들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# 관계법령

####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- 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아니할 수 있다.
  -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  -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  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·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- 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  -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 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  -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